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0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영실,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김화숙,
박기재, 신정호, 이병도,
조상호, 최 선, 홍성룡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해당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보훈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므로 '20년 신설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자 함.
- 먼저 상이자에 대한 대상자 제외 기준을 폐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또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자치구 제외 규정을 폐지하여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안 제7조제3항제4호)
- 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기준에서 상이자 대상자 제외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자치구에
서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으로, 같은 호 중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를 “생활보조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 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를 “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문서번호

2021101200000060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12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4항에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기준에서 대상자(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496천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 받는 대상자) 제외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함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자치구에서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기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도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당 추가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400,000천원으로 연평균 48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보훈예우수당 지급예상인원은 서울지방보훈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기존 보훈예우수당 예산편성인원 400명을 제외하고 추가 인원 400명으로 추계
 - 보훈예우수당은 정액수당으로 1인당 지급액은 1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400,000천원
 - 총 비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지급비용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제7조제4항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에 인한 추가 지급비용)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2,400,000
	소계 (b)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2,400,000
총비용 (b-a)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2,400,000

○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급비용 ≒ 2,400,000천원
 = 1,000천원 × 400명 × 12개월 × 5년

참고) 조례개정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급 예상 인원

○ 기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496천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 하였음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예상 인원

- 총 826명이나, 이 중 市 보훈수당 중복자 및 사망자 등 70명 제외하여 800명으로 추산

구 분	계	4.19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인 원	826	181	424	221

※출처: 서울지방보훈청

○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급대상자 수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a)	800	800	800	800	800
기존지급인원 (b)	400	400	400	400	400
추가지급인원 (c=a-b)	400	400	400	400	4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해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